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7회 임시회(2024. 4.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24-47
----------	-------

2024. 4. 15.  
전문위원 신준호

### 1. 제출경위

- 가. 제 출 자 : 마포구청장(건강동행과)
- 나. 제 출 일 : 2024. 4. 2.
- 다. 회 부 일 : 2024. 4. 3.

### 2. 제출이유

마포구에서 시행한 ‘출산축하금 사업’ 과 ‘가사서비스 사업’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의 ‘첫만남 이용권 사업’ 과 2023년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과 중복, 확대되어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출산축하금, 가사서비스 관련 조항 삭제
-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규정
- 다. 표창 대상자 구체화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기타

1) 입법예고 : 2024. 2. 29 ~ 2024. 3. 20. (의견 없음)

- 2)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 5. 검토의견

### 가. 개정조례안의 개요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서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위해 시행하던 ‘출산축하금 사업’과 ‘가사서비스 사업’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중복되어 삭제하고 기타 출산·양육관련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주요 개정 조문

-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상위 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위임근거를 명시하고 그동안 자치사무로 시행하던 ‘출산축하금’과 ‘가사지원서비스’의 정의를 삭제 후 ‘출산 및 양육지원’과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규정함.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가정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는 지원사업의 위탁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는 저출산의 실태와 다양한 지원사업 마련시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9조는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모범가정과 기업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함.

#### 다. 종합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추진되던 ‘출산축하금 사업’ 과 ‘가사지원서비스 사업’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과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사업’ 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이러한 전환이 현행 조례의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위반되어 구 차원의 사업을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 맞는 출산 및 양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러한 개정사항은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로 이해되며 효율적인 국가 주도 정책에 호응하는 조치로 볼 수 있음.
- 다만, 정부 정책과 별도로 지역 인구 유입과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을 텐데, 현행 「사회보장기본법」<sup>1)</sup>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보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만의 시책으로 추가 지원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위해 필요한 조치로 이해되며 다른 복지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문위원	신 준 호
주무관	박 철 호

#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2.11.24]]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